#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상품의 특이사항

#### Q:「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치매(중증치매, 중등도치매, 경도 치매)를 집중 보장하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100세 또는 9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무엇인가요?

A: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상품" 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일반형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Q: 기계약자 추가가입할인은 무엇인가요?

A: 회사는 정상유지되고 있는 당사 보험상품의 기계약자가 이 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이 계약의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Q: 고액계약 할인은 무엇인가요?

A: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할인율
500만원 미만	-
(다만, 49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500만원 이상	영업보험료의 2.0%

## Q:「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치매상태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있어서 '치매상태'라 함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지 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결과가 1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경도치매)', 2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중등도치매)', 3~5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중증치매)'로 나뉩니다. '치매상태(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Q: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 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해당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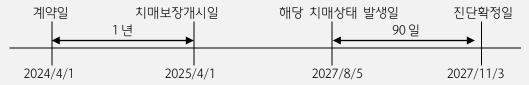
## Q: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서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 상치매상태'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서 '경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중 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경도치매상태'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중등도이 상치매상태'라 함은 '중증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Q:「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보장개시일은 언제부터인가요?

A: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다만, '치매상태'관련 급부에 관한 보장개시일은 치매보장개시일이라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다음날로 합니다. 치매관련 급부는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합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치매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예시)】



다만,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Q :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 요?

A: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Ⅱ. 보험가입 자격요건

## 1. 보험종류

- 보장성보험
- 개인형

명칭	세목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구매성 어디도 한글한 시매한 6미모함	일반형

<sup>※ &</sup>quot;일반형"은 비교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가입나이		
포함기한	모임기인 모임표 급입기인	납입주기	남자	여자	
90세 만기	10/15/20년납	월납	20세 ~ 70세	20세 ~ 70세	
100세 만기	10/15/20년납	걸급	20세 ~ 75세	20세 ~ 75세	

## 3. 가입한도

보험가입금액 : 최고 1,000만원

※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내용, 가입나이 등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 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Ⅲ.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주계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C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 만원
중등도이상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500 만원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500 만원
중증치매 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 : 50 만원(120 회 확정지급)
중등도이상치매 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 : 50 만원(120 회 확정지급)

#### (주)

- 1. 이 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3. '중등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중증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4. '경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치매진단자금 및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자금,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및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경도 이상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간병비,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8.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 9. 매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 10. 중증치매간병비 또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합니다.

#### ▶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나. 보험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보장개시일 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 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Ⅳ. 보험료 산출기초

## 1. 적용이율

####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 2. 적용위험률

#### Q: 적용위험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중증치매발생률		무배당 중등도이상	† 예정 치매발생률	무배당 예정 경도이상치매발생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1	0.000001	0.000006
40세	0.000001	0.000008	0.000007	0.000027	0.000036	0.000111
60세	0.000088	0.000251	0.000361	0.000715	0.001241	0.001983

## 3. 적용해지율

#### Q: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적용한 해지율은 0%~14%이며,

일반형에는 적용해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VI.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해약환급금 예시

## ①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b> </b>		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정찍기간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343,500	0	0.00%	371,100	0	0.00%
6개월	687,000	0	0.00%	742,200	0	0.00%
9개월	1,030,500	0	0.00%	1,113,300	0	0.00%
1년	1,374,000	124,771	9.08%	1,484,400	249,543	16.81%
2년	2,748,000	888,143	32.32%	2,968,800	1,776,286	59.83%
3년	4,122,000	1,668,164	40.47%	4,453,200	3,336,329	74.92%
4년	5,496,000	2,465,386	44.86%	5,937,600	4,930,771	83.04%
5년	6,870,000	3,280,207	47.75%	7,422,000	6,560,414	88.39%
10년	13,740,000	7,365,850	53.61%	14,844,000	14,731,700	99.24%
15년	20,610,000	11,776,250	57.14%	22,266,000	23,552,500	105.78%
19년	26,106,000	15,699,800	60.14%	28,203,600	31,399,600	111.33%
20년	27,480,000	33,476,400	121.82%	29,688,000	33,476,400	112.76%

30년	27,480,000	41,378,700	150.58%	29,688,000	41,378,700	139.38%
40년	27,480,000	44,584,700	162.24%	29,688,000	44,584,700	150.18%
50년	27,480,000	0	0.00%	29,688,000	0	0.00%

#### ②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ION 77 OLE 17 O							
경과기간	해오	<u> 환급금 일부지</u> 급	급명	일반형			
0416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294,600	0	0.00%	318,000	0	0.00%	
6개월	589,200	0	0.00%	636,000	0	0.00%	
9개월	883,800	0	0.00%	954,000	0	0.00%	
1년	1,178,400	109,229	9.27%	1,272,000	218,457	17.17%	
2년	2,356,800	761,757	32.32%	2,544,000	1,523,514	59.89%	
3년	3,535,200	1,428,136	40.40%	3,816,000	2,856,271	74.85%	
4년	4,713,600	2,108,914	44.74%	5,088,000	4,217,829	82.90%	
5년	5,892,000	2,804,443	47.60%	6,360,000	5,608,886	88.19%	
10년	11,784,000	6,287,050	53.35%	12,720,000	12,574,100	98.85%	
15년	17,676,000	10,030,600	56.75%	19,080,000	20,061,200	105.14%	
19년	22,389,600	13,339,800	59.58%	24,168,000	26,679,600	110.39%	
20년	23,568,000	28,422,600	120.60%	25,440,000	28,422,600	111.72%	
30년	23,568,000	34,309,500	145.58%	25,440,000	34,309,500	134.86%	
40년	23,568,000	34,697,400	147.22%	25,440,000	34,697,400	136.39%	
50년	23,568,000	0	0.00%	25,440,000	0	0.00%	

## (주)

-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상기 해약환급금은 당해 보험년도 말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며, 납입보험료는 고액계약 할인 및 기계약 자 추가가입 할인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3. 경과년도와 보험료납입기간(년수)이 동일한 시점(예를 들어 주계약 납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경과년도 20년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직후 연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예시됩니다. 따라서 연계약해당일 도래 전 해지시 예시된 해약환급금 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Ⅶ. 보험가격지수

## Q: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 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40세, 월납]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 남자	격지수 여자	가입금액 (만원)
(무)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50	20	105.9%	105.9%	1,000